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11월 6일
-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저소득층 및 취약보육 계층 아동 밀집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시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 우선 고려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나.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징수 기준 추가 (안 별표 1)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다.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감면 기준 적용 추가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조
- 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의2
- 3)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4) 「지방자치법」 제153조, 156조

나. 예산조치: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6. ~ 10. 26.)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놀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 시설 설치 시 우선 고려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서울형 키즈카페)을 설치하는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이나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 지역에 따른 아동의 놀이권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신설]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에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¹⁾ 및 요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1) 놀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의 놀이활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 방지하는 수준의 돌봄을 말한다.(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단독 입장 가능)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계절적 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임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 아동의 놀이권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현재 우리구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진현황²⁾을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이나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 ‘계절에 상관없이 저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주거 취약지역을 배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놀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

2) 우리구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진현황

구 분	위 치		진행상황
강서1호점	발산1동	수명로2길 50,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2023. 10. 17. ~ 시범운영 중
강서2호점	화곡3동	강서로 231, 2층 (해링턴타워)	공간조성 공사 설계용역 중 (2024. 4. 개관 예정)
강서3호점	화곡4동	곰달래로53길 80, 2층 (대평교회)	공간 선정 확정 (2024. 10. 개관 예정)

- 또한 놀이 공간의 확보 뿐만 아니라 전문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놀이 활동과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놀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규정[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징수 및 감면]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것으로
-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양육지원을 도모하여 서울형 키즈카페의 만족도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징수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정근거: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계획(서울시 가족담당관-24864, 2022. 5. 26.)
20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자원계획(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2170, 2023. 2. 1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입	놀이돌봄이용료		369	5,199	7,644	7,644	7,644	28,500
□ 총 비용			369	5,199	7,644	7,644	7,644	28,5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산출내용	금액(천원)
총계	2023년 1개소, 2024년 이후 3개소 운영에 따른 산출 비용	28,500
놀이돌봄 이용료	<키즈카페 연간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 1호점: 2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2,184천원 - 2호점: 3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3,276천원 - 3호점: 2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2,184천원 ※ 회차별 이용정원 미달 및 이용료 면제자 고려하여 70% 계산	28,500

5. 재원조달 방안: 해당 없음

6. 작성자: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과장 김정근

(담당: 행정8급 임수아 / ☎ 2600-649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놀이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을 지역별로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만9세)	3,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